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·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,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, 과학기술·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,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0. 00. ~ 1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6항제1호 중 “여성가족부”를 “성평등가족부”로 한다.

제8조제7항제1호 중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“산업통상부”로, “국세청·관세청·조달청·통계청·특허청”을 “국가데이터처·지식재산처·국세청·관세청·조달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0항제1호 중 “환경부”를 “기후에너지환경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⑪ (생 략)	⑪ (현행과 같음)